

『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강화 및 글로벌 리더육성을 위하여 건립된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운영 위탁이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39조가 신설·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(중요프로그램운영)만 위탁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고,
- 현재 프로그램운영 위탁 계약기간이 2015년 12월말 종료됨에 따라, 수련관 전체를 운영할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전문적, 체계적 운영으로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탁재산 현황
 - 건 물 명 :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
 - 위 치 : 구미시 선산읍 단계동길 270번지
 - 규 모
 - 본 관 : 부지 10,022㎡, 연면적 6,269.06㎡(지하1층, 지상4층)
 - 생활관 : 부지 6,052㎡, 연면적 6,687.36㎡(지하2층, 지상4층)
 - 사 업 비
 - 본 관 : 112억(국 비 28, 시 비 84)
 - 생활관 : 145억(시 비 138, 특교세 7)

• 주요시설

- 본 관 : 강당, 강의실, 로봇체험관, 야외공연장, 실내체육관, 식당 등
- 생활관 : 생활관(67실), 실내수영장(25m, 5레인), 진로체험실 등

○ 위탁 기간 : 2016. 1. 1 ~ 2018. 12. 31(3년)

○ 운영 소요예산 : 1,661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운영경비	일반관리비	비고
1,661	1,067	515	79	

4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
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39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
- 「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, 제8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“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한다”는 내용의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39조가 신설·시행됨에 따라 현재 프로그램운영의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5년 12월말 이후에 구미시 선산 청소년수련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을 2016년부터 3년 단위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이며 운영 예산은 1,66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.

○ 검토결과

본 동의안은

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39조(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)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8(위탁 제한 중요프로그램의 범위) 및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거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 동의안으로 전문기관 민간위탁 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수련활동 활성화 및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미지역 청소년의 역량 강화 및 리더십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※ 여성가족부령에서 정한 “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”

1.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
2.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